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시 의원 보좌직원 배석〉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88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건영 · 최혁진 · 조계원 · 이기현 · 한병도 · 박정현 ·
신정훈 · 채현일 · 차지호 · 권칠승 · 위성곤 · 윤종균 ·
김성희 · 박지원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 의안번호 : 1448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교섭단체별로 신원조사를 거친 각 1명의 의원 보좌직원의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4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교섭단체별로 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거친 의원 보좌직원 각각 1명의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종전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¹⁾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 2022년 1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원칙적 비공개를 규정한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음.²⁾

1)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2020헌바428 결정)

「대한민국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법 제71조 및 제75조제1항³⁾에 따른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며, 회의 비공개 시에는 위원회 의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의결을 거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⁴⁾ 이 경우 정보위원회 위원과 신원조사를 거친 정보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보좌직원 및 언론인을 퇴장시킨 후 진행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교섭단체별 각 1명의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배석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3)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동시(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시(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예컨대, 2025년 10월 22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위원회는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한 후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심의하였음.

<국회회의록_22대_제429회국회(정기회)_제5차 정보위원회_2025. 10. 22. 일부 발췌>

○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략) ○ 위원장 신성범 현안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5)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994년 정보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정보활동의 기밀성 보호를 위해 여·야 합의로 의원 보좌직원의 회의 배석을 금지하였음.

의원 보좌직원의 배석은 정보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현행법상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신원조사 및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⁶⁾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을 통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정보위원회 자체 운영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①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의 유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회의장 출입 인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미국⁷⁾·영국·프랑스·이탈리아·이스라엘 등 주요국 의회도 의원 보좌직원의 정보위원회 배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③ 의원 보좌직원의 경우 공직자로서의 신분 보장에 한계가 있고, 퇴직 이후 민간기업 등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보안성을 담보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16

6)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7)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경우 특정 사안에 한하여 보안서약 및 국가정보장(DNI)의 비취인가 시 기밀 접근을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나,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